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계약이행실적 관리 및 계약이행지체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 김종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9729호)

2026. 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 관리(안 제14조의2 신설)	2
2. 선금금 목적 외 사용자 및 반복적 이행지체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안 제27조제1항제9호)	6
IV . 입법의 재정영향	15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종양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7. 3.

다. 회 부 일 : 2026. 7.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 강화 및 계약 이행 실적 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계약 이행 성과를 관리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시 반영하도록 하고,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27조제1항제9호).

Ⅲ. 검토의견

1.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 관리

(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의 이행기간 준수율, 납품 품목의 품질 등 계약이행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실적을 고려하여야 함 (안 제14조의2 신설)

최근 한 철도차량 납품업체가 한국철도공사와의 철도차량(ITX-마음) 납품 계약에서 수년간 납품을 지연하였으며, 지급받은 선금을 계약이행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서울교통공사 역시 납품 지연 장기화 등을 이유로 동 업체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¹⁾, 국가계약에서의 이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ITX-마음 납품 현황(2025.7. 기준)]

구분	계약일	납기일	계약물량	납품완료	납품완료 비율
1차	2018.12.31.	2021.12.	150량	104량	69.3%
2차	2019.11.20.	2022.11.	208량	12량	5.8%
합계			358량	116량	32.4%

자료: 한국철도공사

1) 서울교통공사 보도자료, “전동차 납품 지연 반복...서울교통공사, 다원시스 사기죄 고소”, 2026.2.9.

현행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은 경쟁입찰 시 이행실적, 계약 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²⁾,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이행실적,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 공사의 품질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³⁾.

이에 따라 현재도 국가계약에서 계약상대자 선정 시 계약이행실적을 고려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상대자의 이행기간 준수율, 납품 품목의 품질 등 계약이행실적을 관리하고, 계약상대자 결정 시 해당 실적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계약에서의 이행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2)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3) 「국가계약법」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하도급관리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재정경제부는 납품 품질, 이행기간 준수율 등은 데이터의 정량화 및 객관성 확보가 곤란하며 검수·검사관의 주관 개입 여지가 크고 기관별 평가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법적 분쟁 증가 및 이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이 우려되며, 모든 계약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이행실적을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 실익 대비 행정력 소모가 과다할 수 있고, 현재 공사계약 및 물품계약의 경우 각각 시공평가 및 지체상금 부과율을 적격심사 등 낙찰자 결정에 이미 반영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조달청은 개정안이 계약이행실적 관리를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의 목적과 특성 등 필요에 따라 계약 이행실적을 관리하고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대한건설협회는 현재도 공공계약 평가 체계에서 계약목적물의 품질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법률 개정 실익이 부족하고,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 제재가 존재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시에 추가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하며, 이행기간 준수율을 계약상대자 결정 요소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확보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현행 제도에서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을 통해 이행실적 등을 평가 중이므로 별도의 평가제도 신설 시 기존 제도와의 중복 우려가 있고, 평가항목 및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발주기관

별로 상이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저하가 우려되며, 소액 공사까지 계약이행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경우 실적이 부족한 신규·중소 전문건설업체의 공공건설시장 진입 및 성장 기회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엔지니어링 성과물의 품질을 정량화하기 어렵고 발주기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실적을 계약상대자 선정에 활용하는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엔지니어링사업은 관계기관 협의, 민원, 인·허가 지연 등 외부요인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계약상대자의 비귀책사유까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2. 선급금 목적 외 사용자 및 반복적 이행지체자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안 제27조제1항제9호)

현행	개정안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 1. ~ 8. (생략)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 다. (생략) <u><신설></u> <u><신설></u>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 (안 제27조 제1항)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계약을 이행할 때에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지급받은 선급금을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여 제26조에 따른 지체상금이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과되었던 자 (지체상금 부과 실적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행 「국고금 관리법」 제26조는 지출관이 운임, 용선료(傭船料),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 등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概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

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⁴⁾, 동법 시행령에서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70% 이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⁵⁾.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선금의 용도는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으로 제한되고⁶⁾,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잔액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⁷⁾.

또한, 현행 「국가계약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국가계약에서의 이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⁸⁾.

4) 제26조(선금과 개산금)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概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5) 제40조(선금) ①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6)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8) 「국가계약법」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개정안은 선급금을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한 자와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지체상금을 납부한 자를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성실한 계약 이행을 유도하려는 취지임.

현행 「국가계약법」 제27조는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사기 그 밖의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⁹⁾.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 1천분의 0.5
 2.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천분의 0.75.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1천분의 0.5로 한다.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1천분의 1.25
 4.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 1천분의 1.5
 5.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천분의 2.5
- 9)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사업법」,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

다만, 개정안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과도하지는 않은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판례는 국가계약법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규정한 취지는 국가계약에서 공정한 입찰과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입찰 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위반행위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¹⁰⁾.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정도의 사유인지 비례성의 측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 10)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26811 판결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선금을 부정 사용하거나 계약이행을 지체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려는 동법 개정안 다수¹¹⁾가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1)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 확대 관련

대한건설협회는 국가계약이 사인(私人) 간 계약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재적 성격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확대하는 것은 계약당사자 간 불공정을 심화시키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모든 공공 발주에 대한 참여를 차단하는 것으로서 침익적 효과가 크므로 비례의 원칙을 고려할 때 엄격한 요건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선금의 목적 외 사용이나 계약 이행 지체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에 따라 선금 반환,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제·해지 등 제재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신설 시 중복제재로 업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11) 의안번호 제2212768호(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제2216579호(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제2217159호(정일영의원 대표발의)

(2) 선금금 목적 외 사용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관련

재정경제부는 선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자체 자금 등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할 수 있어 이를 곧바로 계약이행 불능이나 중대한 지장으로 단정하여 제재처분하는 것은 비례성 측면에서 과도하고, 현재 선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선금 반환을 즉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제수단을 이미 마련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선금의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하여 계약 해지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 추가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3) 반복적 이행지체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관련

재정경제부는 현재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며, 반복적 지체 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¹²⁾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해당 제재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대한건설협회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이행 지연의 경우에도 발주기관의 일방적 지체상금 부과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출함.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현재 계약이행 지연 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어 추가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며, 정당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발주기관별로 판단이 달라짐에 따라 객관성과 형평성 저해가 우려되고, 지체상금 부과 이력의 경우 발주기관별로 관리되고 있어 입찰 단계에서 제재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함.

※ 신·구조문 대비표

[illegible]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신 설></u> ② ~ ⑤ (생략)	라. 계약을 이행할 때에 「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지급 받은 선급금을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여 제26조에 따른 지체상금이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과되었던 자. 이 경우 지체상금 부과 실적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 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행 중인 계약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9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급금을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V. 입법의 재정영향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¹³⁾

문 의 처
02)6788-5160

13)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